

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의3] <개정 2020. 1. 7.>

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(제18조의2제2항 관련)

(단위 : %)

2019년 12월 31일까지	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	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	2024년 1월 1일 이후
35	40	45	50